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2017.11.)

#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용 범

#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 1. 안건명

-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23일(목), 한일용 의원 외 17인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4일(금)

## 4. 검토의견

-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는 종속적 자치만 허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2017년 11월 23일 한일용 의원 외 17인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이를 중앙정부 및 국회 그리고 주요 정당에 확고한 뜻을 알리고자 발의안건임.

-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어 왔음.
-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임.
- 이에 마포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는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됨.